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 규정을 상위 법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등 정비

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 : 군 본청의 재무관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⑵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5조)

⑶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11조)

⑷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일치 및 상한금액 삭제(안 제12조)

· 상한금액 삭제 :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3천만원 이상인 공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⑴ 입법예고 : 의견 없음〔기간 : 2018. 8.23. ~ 9.12.(20일간)〕

⑵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감사실-6025(2018. 8.13.)〕

⑶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45320(2018. 8.13.)〕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감독 대상 공사와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영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감독대상 공사와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 본청의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생 략) ② (생 략)	제4조(기능)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② (생 략)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